

의안번호	제256-1호
의결 연월일	2011년 12월 23일 (제 305 회)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12월 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56-1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12월 8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수정이유

- 충북혁신도시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여 조합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,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을 명확히 하며, 결산검사위원을 3인 이내로 하여 관리·감독의 내실을 기함.
-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내용 표현을 적합하고, 통일되게 하기 위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조합회의 구성 및 자격조건 조문 변경(안 제6조)
 -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의 임기 ⇒ 재직기간(안 제6조제4항)
 - 지방의원 및 전문가 임기 ⇒ 2년,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(안 제6조제5항)
-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(안 제7조)
 - 1년 ⇒ 2년(안 제7조제1항)
- 조합 경비부담에 관한 조문 변경(안 제14조)
 - 기타 필요한 사업 ⇒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(안 제14조제2항)
- 결산검사위원 인원을 2인에서 3인으로 변경(안 제16조)
 - 2인 ⇒ 3인(안 제16조제3항)
-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에 관한 조문 변경(안 제20조)
 - 조합의 규약변경에 관한 항목을 추가

3. 규약제정안 : 붙임

4. 관련법규 : 붙임

5.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: 해당 없음

6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7. 기타사항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“이라한다) 제15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“조합원”을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1인.”을 “1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과 제9항을 삭제하고, 제7항과 제8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.

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조합회의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부의장은 진천군수 및 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실시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1 또는 2”를 “하나 또는 둘 이상의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조합회의는 매년 4/4분기 중 1회에 한하여 조합의 사무에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다.

안 제12조제2항 중 “진천군수, 음성군수”를 “진천군수와 음성군수의”로 한다.

안 제14조제1항 중 “조합원인”을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조합운영”을 “조합운영의”로, “균분한다”를 “균분하여 부담한다”로 한다.

②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부담하고,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.

안 제15조의 제목 “(예산·회계 등)”을 “(예산편성 및 집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”를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에”로 한다.

안 제16조제1항 중 “3월이내(5월31일)”을 “3월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”를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2인”을 “3인”으로 한다.

안 제17조 중 “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”를 “해당 지방자치단체간”으로 한다.

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며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분담 비율에 의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한다)</p>
<p>제6조(구성 및 자격) ①~② (생략) ③ 조합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1. 조합원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각 1인. 2. 조합원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중 각 1인. 3. 조합원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각 1인.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. ⑤ 제3항 제1호,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⑥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 재직 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⑦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⑧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⑨ 제8항에 의거 추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	<p>제6조(구성 및 자격) ①~② (제정안과 같음) ③ 조합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1. 해당 1인 2. 해당 1인 3. 해당 1인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 ⑤ . . . 제2호 및 하고,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삭 제> ⑥ (제정안과 같음) ⑦ (제정안과 같음) <삭 제>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의장 및 부의장) ① 조합회의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부의장은 진천군수·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</p>	<p>제7조(의장 및 부의장) ①</p> <p>.</p> <p>선출하고, 및</p> <p>.</p> <p>. 실시하며, 2년</p> <p>.</p> <p>②~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④</p> <p>.</p> <p>. 남은</p>
<p>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조합회의가 심의·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 또는 2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</p> <p>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 하나 또는 둘 이상의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 <p>.</p>
<p>제11조(행정사무감사)</p> <p>①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4/4분기 중 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11조(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)</p> <p>① 매년 4/4분기 중 1회에 한하여 조합의 사무에</p> <p>.</p> <p>②~③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2조(조합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조합장은 진천군수, 음성군수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조합장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진천군수와 음성군수의</p> <p>.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4조(경비부담)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조합원인 지방 자치단체의 분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/p> <p>②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,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합회의에서 정한다.</p> <p>1. 조합운영 필요경비 중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고, 사무실운영 등 경상경비는 조합원이 균분한다.</p>	<p>제14조(경비부담) ①</p> <p>. 해당</p> <p>.</p> <p>②</p> <p>.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은</p> <p>1. 조합운영의</p> <p>.</p> <p>.</p> <p>균분하여 부담한다.</p>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5조(예산·회계 등)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·확정한다.</p> <p>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<u>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</u>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15조(예산편성 및 집행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</p> <p><u>해당 지방자치단체에</u></p> <p>③~④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6조(결산)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(5월31일)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<u>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</u>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,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16조(결산) ① 3월이내에</p> <p>.</p> <p>.</p> <p>②</p> <p>.</p> <p>. . .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에</u></p> <p>.</p> <p>③ 3인</p> <p>.</p> <p>.</p>
<p>제17조(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)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처분하며, 필요시 <u>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</u> 협의에 의한다.</p>	<p>제17조(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)</p> <p>.</p> <p>.</p> <p>. . <u>해당 지방자치단체간</u></p> <p>.</p>
<p>제20조(조합의 해산)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분담비율에 의한다.</p>	<p>제20조(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며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분담비율에 의한다.</p>

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합의 명칭) 이 조합은 “충북혁신도시관리청”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조합의 구성) 이 조합은 충청북도, 진천군, 음성군(이하 “조합원”이라 한다)을 구성원으로 한다.

제4조 (사무소의 위치) 이 조합의 사무소는 충북혁신도시내에 둔다.

제5조(조합의 사무)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충북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
2. 충북혁신도시 건설관련 협의·조정 에 관한 사무
3. 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 정주여건 조성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무
4. 충북혁신도시내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
5. 기타 조합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

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,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2장 조합회의

제6조(구성 및 자격)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.

② 조합회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충청북도 3인, 진천군 3인, 음성군 3인으로 한다.

③ 조합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각 1인
2.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중 각 1인
3. 해당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각 1인

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⑤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⑥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장 및 부의장) ① 조합회의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, 부의장은 진천군수 및 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실시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, 조합회의를 관장한다.

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8조(의결사항)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조합규약의 개정안
2.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3. 예산의 심의·확정과 결산의 승인
4.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
5.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
6.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
7.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8.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·처분
9.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9조(조합회의의 운영)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4/4분기 중에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, 공무원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조합회의가 심의·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조합회의는 매년 4/4분기 중 1회에 한하여 조합의 사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장 집행기관

제12조(조합장)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조합장은 진천군수와 음성군수의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한다.

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,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3조(사무기구)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장 재무

제14조(경비부담)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, 구체적인 사업비 부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.

1. 조합운영의 필요경비 중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 총액 인건비에 반영하고, 사무실운영 등 경상경비는 조합원이 균분하여 부담한다.

2. 공동사업의 사업경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분담비율은 조합 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5조(예산편성 및 집행)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·확정한다.

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, 재무회계,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『지방재정법』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및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.

④ 기타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6조(결산)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,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7조(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)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에 따라 처분하며,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다.

제18조(위탁운영)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5장 해산

제19조(조합의 존속기간) 조합의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(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경우에는 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며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분담비율에 의한다.

제21조(기타)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10. 6. 8 법률 제10344호], 시행일 2010. 6. 8

- 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2.29>
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- 제16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.
-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.

- 제161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·의결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62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)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
2.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사무소의 위치
4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
5.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
6.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
7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8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63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·감독) ① 시·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·도지사의,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<개정 2008.2.29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>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